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2025. 11. 26(수)

순서	검토안건	제안
1	아현동 LED 전자계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아현동 LED 전자계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5. 11. 14.
- 회부일 : 2025. 11. 18. (의안번호 : 25-151)

2. 제안이유

-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LED 전자계시대를 역량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아현동 LED 전자계시대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1항

나. 필요성 :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전자계시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LED 전자계시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위탁시설 개요



- 민간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없음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LED 전자계시대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음.

- 나. LED전자게시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16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 「서울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및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추진일정

- 2025. 12. ~ 2026. 1. : 위탁운영업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 2026. 2. : 위·수탁 협약체결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홍보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LED 전자게시대를 역량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LED 전자게시대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LED전자게시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 전문적인 전자게시대 운영을 통해 관리 효율성 확보
- 구 직접 운영 대비 민간의 기술력·유연성을 통한 지속적 유지보수 및 서비스 향상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 지원 등 지역경제 기여

- 위탁계약시 실무적 유의사항
 - 공공목적 계시 콘텐츠 비율 또는 의무편성
 - 불법광고물 예방·계도와의 연계방안
 - 위탁기간, 재계약 조건, 수익배분 구조 등 명확한 기준 설정
 -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응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6. 종합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다만, 위탁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계약 이행 관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 조율과 후속 관리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 7. 6., 2021. 12. 14.>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9643호, 2025. 5. 19., 일부개정]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7.13., 2019. 7. 18., 2023.5.22.>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1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708호, 2024. 9. 12., 일부개정]

제18조(전자게시대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

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한 전자게시대의 경우에는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7.9.>
-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항에서 이동 2020.7.9.>
- (본조 신설 2019.4.2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1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793호, 2025. 9. 18.,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2023.3.9.>